



동작!
그만!

부동산 시장 교란행위

부동산 거래신고 위반(의심)행위 대표적 사례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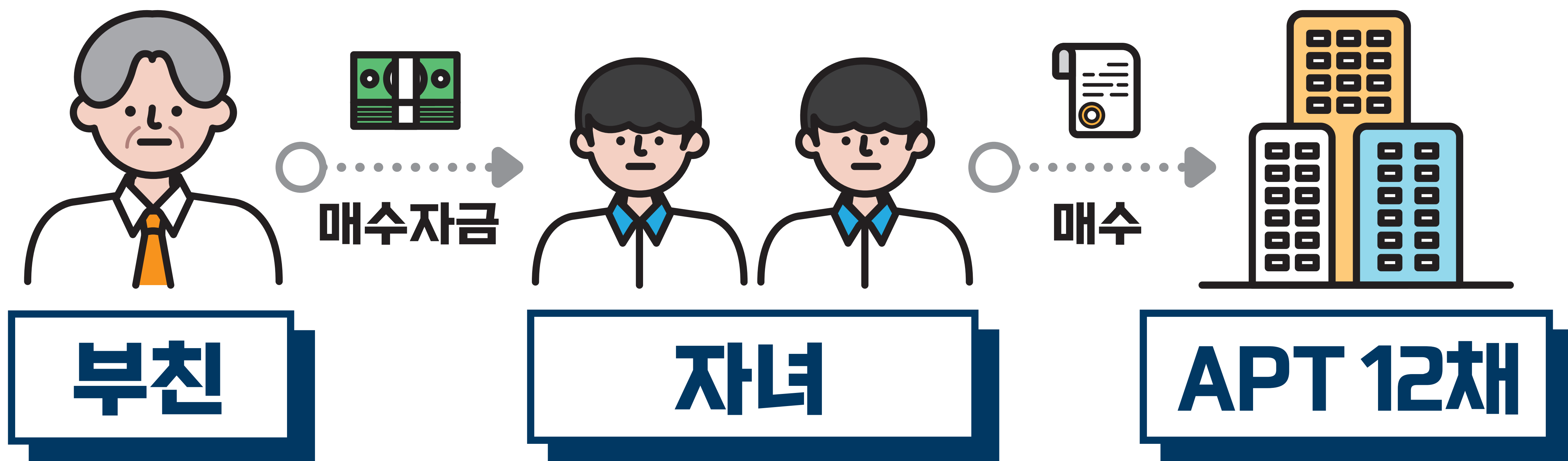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
Incheon Metropolitan City

1 편법증여

미성년자가 '갭투기'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,
필요한 매수자금 전부 부친이 조달(부친→매도인에게 송금)

▶ 편법증여 의심국세청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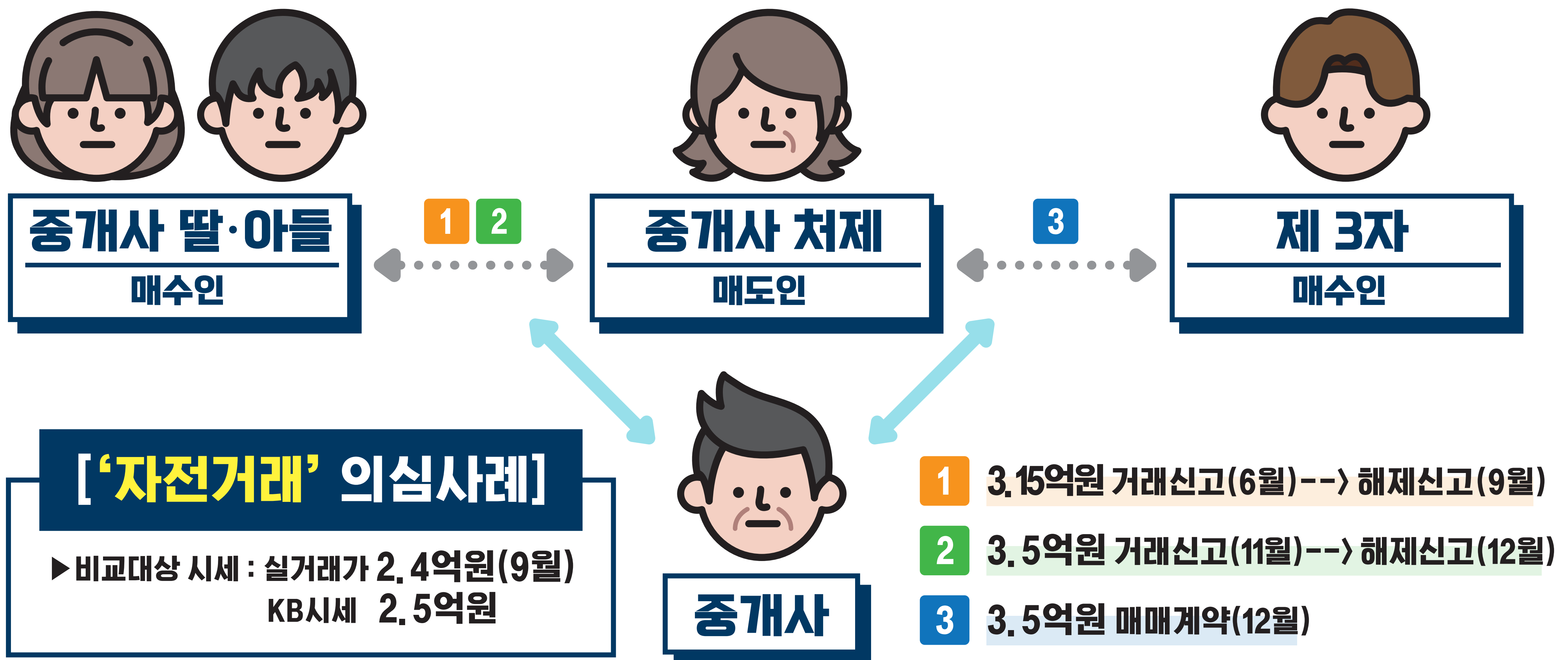


▶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하여,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 추징

②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

공인중개사가 처제 아파트를 **자녀들 명의로 매수 신고**하고, 이를 다시 제3자에게 **더 높은 가격(1.1억 ↑, 46%)**으로 중개 후 종전 거래를 해제

▶ **처제는 1.1억원의 부당한 이익 취득**



- ▶ “자전거래”(「공인중개사법」 위반) 및 “허위신고”(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위반)가 의심
- ▶ 혐의 확정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3 명의신탁

본인·배우자·형의 아파트 32채를 **대금 수수료도 없이**
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

▶ **명의신탁의심경찰청 수사이력**



▶ **경찰청의 범죄 수사**로 혐의 확정 시, **5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2억원 이하의 벌금**(「부동산실명법」)

4 업다운 계약신고

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거나,
시세조작 · 대출한도 상향 등의 목적으로 업계약 체결



▶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취득가액(실제 거래가격)의 10% 이하 과태료

집값 띄우기 등 **부동산 시장 교란행위**를 막기 위해
실거래가 확인시 등기일자까지 꼭 확인하세요.

인천광역시 지도포털

<https://imap.incheon.go.kr/>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

<https://rt.molit.go.kr/>



부동산 불법행위 X 적극 신고하세요!!



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

무엇을 신고하고 싶으신가요?

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

집값담합, 시세교란, 무등록중개, 업다운 계약신고 등



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

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·광고

명시의무, 부당한 표시·광고, 광고주체 위반 등



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

통합 콜센터 **1644-9782**
(구출발리)

1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

2번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·광고

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(www.budongsan24.kr)



인천광역시
Incheon Metropolitan City